



## 강남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부과 취소

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**【부과취소 및 변경】**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 세 자 : \*\*\*
2. 부과취소사유 : 세목 착오입력(양소가 증소로 전산입력)되어 정정처리함
3. 건수 및 세액 :

(단위 : 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건	23,510,460	23,510,460	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결의결정서 1부.  
 2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부과취소내역서 1부.  
 3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납부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각 1부. 끝.

주무관 **홍유기** (지방소득세 2팀 **윤미라** 세무2과장 **김광수** 기획경제국장 **전결 07/24** **문경수**)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25499 ( ) 접수 ( )  
 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[www.gangnam.go.kr](http://www.gangnam.go.kr)  
 전화 02-3423-5704 /전송 02)3423-8834 / [gong02@gangnam.go.kr](mailto:gong02@gangnam.go.kr) / 부분공개(6)